

● 제28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8. 6. 2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2492, 2494

### I. 결산안 개요

#### 1.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8. 5. 31.
- 다. 회부일 : 2018. 6. 11.

### II. 결산현황

####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3,118,953백만원
- 징수결정액 : 3,114,824백만원
- 실제수납액 : 3,110,196백만원
- 미수납액 : 4,628백만원
- 결손처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628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9%임 (전년도 99.8%)

#### <2017회계연도복지본부소관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계	3,118,954	3,114,824	3,110,196	4,628	99.9%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 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2,051,291	2,048,507	2,043,879	4,628	99.8%
200 세외수입	35,143	50,274	45,646	4,628	90.8%
210 경상적세외수입	13,061	15,190	14,582	608	96.0%
211 재산임대수입	737	424	424	0	1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737	424	424	0	100.0%
212 사용료수입		76	2	74	2.7%
212-08 기타사용료		76	2	74	2.7%
213 수수료수입	30	33	33		100.0%
213-01 증지수입	30	33	33		100.0%
214 사업수입	12,294	14,395	13,866	529	96.3%
214-02 주차요금수입	181	90	90		100.0%
214-09 기타사업수입	12,113	14,305	13,776	529	96.3%
216 이자수입		261	256	5	98.0%
216-06 기타이자수입		261	256	5	98.0%
220 임시적세외수입	22,082	35,084	31,065	4,020	88.5%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1	16	16	50.4%
223-03 변상금		31	16	16	50.4%
224 기타수입	21,270	32,463	29,858	2,605	92.0%
224-01 불용품매각대	15	19	19		100.0%
224-04 시·도비반환금수입	14,057	25,129	22,678	2,451	90.2%
224-06 그외수입	7,198	7,314	7,161	153	97.9%
225 지난연도수입	812	2,590	1,191	1,400	46.0%
225-01 지난연도수입	812	2,590	1,191	1,400	46.0%
300 지방교부세	170	170	170		100.0%
310 지방교부세	170	170	170		100.0%
311 지방교부세	170	170	170		100.0%
311-02 특별교부세	170	170	170		100.0%
500 보조금	1,996,896	1,987,341	1,987,341		100.0%
510 국고보조금등	1,996,896	1,987,341	1,987,341		100.0%
511 국고보조금등	1,996,896	1,987,341	1,987,341		100.0%
511-01 국고보조금	1,985,727	1,975,181	1,975,181		100.0%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84	7,959	7,959		100.0%
511-03 기금	3,785	4,201	4,201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082	10,721	10,721		100.0%
710 보전수입등	19,082	10,721	10,721		100.0%
712 전년도이월금	18,780	10,588	10,588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8,780	10,588	10,588		1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302	133	133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 액	수납률 (B/A)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02	133	133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67,662	1,066,318	1,066,318		100.0%
200	세외수입	501	2,930	2,930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501	2,930	2,930		100.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6	193	193		100.0%
	223-01 과징금	36	193	193		100.0%
	224 기타수입	465	2,737	2,737		100.0%
	224-06 그외수입	465	2,737	2,737		100.0%
500	보조금	532,800	529,440	529,44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532,800	529,440	529,44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532,800	529,440	529,440		100.0%
	511-01 국고보조금	532,800	529,440	529,440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4,360	533,947	533,947		100.0%
	710 보전수입등	1,560	4,507	4,507		100.0%
	711 잉여금	1,560	4,507	4,507		100.0%
	711-01 순세계잉여금	1,560	4,507	4,507		100.0%
	720 내부거래	532,800	529,440	529,440		100.0%
	721 전입금	532,800	529,440	529,440		1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32,800	529,440	529,440		100.0%

## 2. 세출결산

- 예산액 : 5,290,303백만원
- 예산증감 : 22,169백만원
- 예산현액 : 5,312,472백만원
- 지출액 : 4,761,175백만원
- 이월액 : 10,649백만원
- 불용액 : 68,273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3% 발생(전년도 1.9%)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68,273	12,035	0	52,052	4,186	0

<2017회계연도복지본부세출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b>복지본부 합계</b>	<b>5,312,475</b>	<b>5,233,553</b>	<b>10,649</b>	<b>68,273</b>	<b>1.3%</b>
<b>일반회계</b>	<b>4,221,493</b>	<b>4,152,388</b>	<b>10,649</b>	<b>58,456</b>	<b>1.4%</b>
<b>복지정책과</b>	<b>245,346</b>	<b>236,326</b>	<b>445</b>	<b>8,575</b>	<b>3.5%</b>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244,801	236,006	445	8,350	3.4%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51,663	46,781		4,882	9.4%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70,357	166,449	445	3,463	2.0%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2,780	22,775		5	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복지정책과)	316	226		90	28.6%
기본경비	316	226		90	28.6%
일반예산(재무활동)	229	95		134	58.6%
보전지출(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29	95		134	58.6%
<b>희망복지지원과</b>	<b>1,296,704</b>	<b>1,289,838</b>	<b>60</b>	<b>6,805</b>	<b>0.5%</b>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34	34			0.0%
기본경비	34	34			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763,693	760,187	60	3,446	0.5%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690,733	687,892		2,841	0.4%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37,111	36,788		323	0.9%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735	2,539		197	7.2%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33,114	32,969	60	85	0.3%
일반예산(재무활동)	532,977	529,617		3,360	0.6%
내부거래지출(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532,800	529,440		3,360	0.6%
보전지출	176	176		0	0.0%
<b>어르신복지과</b>	<b>1,641,188</b>	<b>1,613,183</b>	<b>4,789</b>	<b>23,216</b>	<b>1.4%</b>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1,631,149	1,603,206	4,789	23,154	1.4%
치매어르신지원강화	169,340	157,379	4,744	7,217	4.3%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1,386,649	1,373,074		13,574	1.0%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43,463	42,002	45	1,417	3.3%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1,696	30,751		945	3.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37	37		0	0.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 A-B-C)	불용률 (%)
	기본경비	37	37		0	0.0%
	일반예산(재무활동)	10,003	9,940		63	0.6%
	보전지출(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10,003	9,940		63	0.6%
<b>인생이모작지원과</b>		<b>195,907</b>	<b>193,747</b>	<b>85</b>	<b>2,075</b>	<b>1.1%</b>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194,654	192,493	85	2,075	1.1%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127,502	126,008	85	1,409	1.1%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67,152	66,486		666	1.0%
	재무활동(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1,228	1,228		0	0.0%
	보전지출	1,228	1,228		0	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5	25			0.0%
	기본경비	25	25			0.0%
<b>장애인복지정책과</b>		<b>200,707</b>	<b>189,273</b>	<b>2,432</b>	<b>9,002</b>	<b>4.5%</b>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196,902	185,468	2,432	9,002	4.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42,558	135,551		7,007	4.9%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47,453	46,258		1,195	2.5%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1,135	1,096		40	3.5%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5,756	2,563	2,432	761	13.2%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8	38			0.0%
	기본경비	38	38			0.0%
	일반예산(재무활동)	3,767	3,767			0.0%
	보전지출(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767	3,767			0.0%
<b>장애인자립지원과</b>		<b>518,593</b>	<b>512,140</b>	<b>2,780</b>	<b>3,673</b>	<b>0.7%</b>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503,195	496,743	2,780	3,673	0.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476,557	474,225		2,333	0.5%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10,298	6,720	2,780	797	7.7%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16,340	15,798		543	3.3%
	재무활동(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5,362	15,362		0	0.0%
	보전지출(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5,362	15,362		0	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5	35		0	0.1%
	기본경비	35	35		0	0.1%
<b>자활지원과</b>		<b>123,048</b>	<b>117,880</b>	<b>58</b>	<b>5,110</b>	<b>4.2%</b>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51,840	49,069	58	2,713	5.2%
	노숙인 자활지원	26,361	24,746	58	1,558	5.9%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5,479	24,323		1,155	4.5%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69,751	67,377		2,373	3.4%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69,751	67,377		2,373	3.4%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자활지원과)	29	29		0	0.4%
	기본경비	29	29		0	0.4%
	일반예산(재무활동)	1,428	1,405		23	1.6%
	보전지출(복지본부 자활지원과)	1,428	1,405		23	1.6%
<b>도시개발특별회계</b>		<b>23,320</b>	<b>22,342</b>	<b>0</b>	<b>979</b>	<b>4.2%</b>
<b>어르신복지과</b>		<b>8,368</b>	<b>8,368</b>			<b>0.0%</b>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8,368	8,368			0.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 A - B - C)	불용률 (%)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8,368	8,368			0.0%
<b>인생이모작지원과</b>		<b>14,952</b>	<b>13,974</b>		<b>979</b>	<b>6.5%</b>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14,952	13,974		979	6.5%
	은퇴후제2인생설계지원	14,952	13,974		979	6.5%
<b>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b>		<b>1,067,662</b>	<b>1,058,824</b>		<b>8,838</b>	<b>0.8%</b>
<b>희망복지지원과</b>		<b>1,067,662</b>	<b>1,058,824</b>		<b>8,838</b>	<b>0.8%</b>
	행정운영경비	34	34		0	0.5%
	인력운영비	34	34		0	0.5%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1,067,628	1,058,790		8,838	0.8%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067,628	1,058,790		8,838	0.8%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총 12건, 1,823백만원

다. 예산 이체 : 총 23건, 72,016백만원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36건, 6,521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17건, 10,649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 = ① - ② - ③
3,065,265	3,048,939	3,038,197	2,268	8,474

### 3.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7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계	326,454	△3,118	7,111	10,229	323,335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4,503	△506	263	769	13,997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4,961	△373	2,325	2,698	24,588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11,070	△3,546	1,015	4,560	7,524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5,920	1,306	3,508	2,202	277,226

4. 채권현재액 : 27,763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6,859,367.22㎡ 951,237백만원,
- 건물 224,226.88㎡ 247,887백만원,
- 기타 23건 1,678백만원,

총 1,200,803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계	1,153,457	47,901	555	1,200,803
행정 재산	1,135,540	47,901	-	1,183,441
공용재산	431,145	35,526	-	466,671
공공용재산	698,379	12,262	-	710,641
기업용재산	6,016	113	-	6,129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17,917	-	555	17,362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복지본부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34개, 현재액 84백만원

〈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구분	2016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32	3	1	4	-	2	2	34
	금액	75,085	9,735	4,400	14,135	-	5,690	5,690	83,530
일반회계	수량	32	3	1	4	-	2	2	34
	금액	75,085	9,735	4,400	14,135	-	5,690	5,690	83,530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세입 결산 검토

#####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 운용 요망

- 복지본부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입 예산편성시 세입내용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표>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과부족액 (c-a) (차액비율)	과부족 상세사유
세외 수입	공유 재산 임대료	736,634	424,113	424,043	△312,591 (△42.4%)	2016년 12월 21일 승회원 부대시설 운영자인 (주) 통일로 강제집행에 따라 부대시설 미운영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미부과되어 부족분 발생
	주차요 금수입	181,241	89,781	89,781	△91,460 (△50.5%)	2017년 2월부터 승회원 주차시설 무료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하여 주차 수입 감소(승회원 188면)
	불용품 매각대	15,000	19,101	19,101	4,101 (27.3%)	내구연한 경과 차량 등 매각대금으로 예측 어려움
	사·도비 반환금 수입	14,056,667	25,129,438	22,678,263	8,621,596 (61.3%)	추경예산편성 및 반납 고지 등 징수 독려로 초과 수납
	지난 연도 수입	812,180	2,590,127	1,190,529	378,349 (46.6%)	지난연도 보조금 잔액, 발생이자 미반납액 징수로 수입금 증가
보전 수입 등및 내부 거래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8,779,548	10,588,371	10,588,371	△8,191,177 (△43.6%)	중앙정부 '16년 말 감액내시에 따라 따라 예산편성일시 대비 '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감소

	민간용 자금회 수수입	302,360	132,998	132,998	△169,362 (△56.0%)	당초 예상보다 대출상환금 감소
--	-------------------	---------	---------	---------	----------------------	------------------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경우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바,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집행잔액 추계가 곤란하여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해마다 예산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 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규모 및 반납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치구가 사업지원 목적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과부족액 (c-a) (차액비율)	과부족 상세사유
세외수입	과징금	35,880	193,466	193,466	157,586 (439.2%)	의료급여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건 증가
	그외수입	465,455	2,736,624	2,736,624	2,271,169 (487.9%)	이자수입 등 기타잡수입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1,560,000	4,506,676	4,506,676	2,946,676 (188.9%)	과년도 결산잉여금 증가

**나. 국고보조금 과소 및 미교부 대책 수립 요망**

-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내시에 의거하여 서울시 예산안을 편성 및 심의해야 하는 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일방적 변경시

서울시 예산은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변경을 해야 하는 바, 이로 인한 서울시 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비롯하여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다음 표와 같이 2017회계년도 국고보조금 부족액은 172억 2천 5백만원인 바, 이로 인해 매칭되는 서울시비분(172억 2천 5백만원)을 감액해야 했음.
- 서울시비분 감액조치로 인해, 적정한 예산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 축소에 따라 기존 사업 대상자에 대한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무엇보다 서울시비분 감액이 불용처리될 경우 소중한 재원이 적시적소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음.
-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국고보조금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분장 재조정 및 재원 이전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 국고보조금 과소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 과목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 (확보)액	차액	비율 (%)
			국고	국고		
총계			1,722,615,369	1,705,390,662	△17,224,707	△1.0%

부서	사업명	예산 과목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 (확보)액	차액	비율 (%)
			국고	국고		
희망복지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16,302,794	15,302,794	△1,000,000	△6.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재산장제급여(국비)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175,060	2,142,826	△32,234	△1.5%
	의료급여사업	민간위탁금	524,093,812	520,705,601	△3,388,211	△0.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행사운영비	8,000	7,000	△1,000	△12.5%
어르신복 지과	기초연금 지급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149,997,322	1,138,724,527	△11,272,795	△1.0%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 업보조(이전 재원)	266,011	264,324	△1,687	△0.6%
인생이모 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업보조	827,000	818,163	△8,837	△1.1%
장애인복 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 업보조(자체 재원)	702,720	652,136	△50,584	△7.2%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국비)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057,713	1,041,497	△16,216	△1.5%
장애인자 립지원과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 터 운영	사회복지사 업보조	3,785,000	3,784,000	△1,000	0.0%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회복지사 업보조	130,000	119,400	△10,600	△8.2%
	장애수당-기초(국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9,238,984	9,101,631	△137,353	△1.5%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8,165,429	8,115,749	△49,680	△0.6%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회복지사 업보조	601,701	526,453	△75,248	△12.5%
자활지원 과	희망키움통장 I·II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3,417,841	2,773,874	△643,967	△18.8%
	내일키움통장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965,982	735,687	△230,295	△23.8%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880,000	575,000	△305,000	△34.7%

## 다. 세외수입 누락된 수납예산에 대한 세입 추계 철저

- 복지본부는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타 사용료 등 세외 수입(717,419천원) 징수결정을 통해 다음 표와 같이 7억 1천 7백만원을 징수조치하였음.
- 공유재산임대료를 재산임대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기타 사용료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이자수입 등은 예측 어려움을 사유로 세입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처리하였음.
- 세입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계하여 세출예산을 통해 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으로 세입처리한 현황

(단위: 천원)

예과	산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수납액	세입예산편성없이 징수결정 사유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	258,767	48,563	210,204	공유재산임대료를 기타 사용료로 징수
	기타이자수입	-	24,367	22,646	1,721	시비보조금반환금 반납지연을 위한 이자
입시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	326,998	304,458	22,540	2015년 4월 승화원 부대시설 (주)통일로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료에 대한 변상금 120% 부과(통일로 6회 304백만원)
	불용품 매각대	-	13,000	13,000	-	내구연한 경과 차량 매각대금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차량매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94,288	94,288	-	의료급여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건 발생

## 2 세출 결산 검토

-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5조 3,125억원이고, 이 중 5조 2,33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82억원(불용률 0.01%)으로 나타났음.

### 가. 행정편의적 예산변경제도 활용 지양

#### 1) 불합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행정편의적 예산변경 지양 필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집행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며,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사업의 개요

- ① 사업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② 사업내용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동, 노인, 장애인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원칙(일부 사업 제외)
  - 사업종류 : 19개 사업(자치구별 신청에 의거 사업시행, 구별4개~10개)
  -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자에 월 3~21만원의 바우처 지원 (사업, 등급별 차등)
    - ※ 본인부담금 10~30% (월 6천원~8만원, 대상자 소득기준 차등)
- ③ 소요예산 : 11,166백만원
  - ※ 추진실적 : 이용자13,523명(제공인력2,160명)

- 집행부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2017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유보액(316,361천원)에 대비한 시비 매칭비 부족분(316,361천원)을 반영하여 증액편성(114억2천만원)을 내용으로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제출(2017.07.12.) 하여 의회의 동의(2017.07.21.)를 얻은 바 있음.
- 그러나 집행부는 본회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계획 방침(2017.08.24.)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용 조치했음.

**〈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변경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변경후 예산현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31,000	255,000		1,386,000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56,734		255,000	10,801,734

- 집행부는 가사간병지원사업의 국비 예산이 16년 대비 31.2% 감액됨에 따라 자치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중 255백만원(국비170,시비85)을 가사간병지원사업으로 예산변경하였다고 함.
  - '16년 국비 1,095백만원에서 '17년 754백만원으로 341백만원 감액
  - 가사간병 지원서비스는 지원기간이 최대 2년으로 사업비 감액시 기존이용자 우선지원으로 인해 신규신청자 선정수가 감소되어 민원발생



- 집행부는 예산변경에 대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은 자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사업으로 복지부에서는 총액만 교부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업별 수요, 집행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자체조정 가능하여 절대사업비가 부족한 가사간병지원사업으로 예산 변경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검토하건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기능으로 분리되어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책임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음.
- 그러나 집행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원대상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증)편성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서 바로 예산사용 변경을 통해 (감)변경한 행태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예산 집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의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탈적인 집행권 남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을 사유로 면책되기 힘들다고 보이는 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예산변경권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집행부가 존중하며, 지방의회가 가지는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각인하여 의결된 예산안을 준수하는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 관례답습적 예산 편성과 행정편의적 예산변경 대상 사업

### 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

-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서울시 보훈대상 및 단체의 예우와 명예선양,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바,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으로 ① 보훈대상자 위문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③ 독립유공자 수당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328억 8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억원 (감)변경되고 44억 8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불용률 13.5%)
- 집행부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이 연로하여 의료기관 이용 횟수 증가로 연말(12월) 지출 예정액이 부족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의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감변경하여 집행하였음.(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9억 9천만원 편성되어 2억원 (증)변경된 바, 1억 3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불용률 8.8%))
-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의료비 부족분을 충당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보훈대상 단체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은 그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변경 집행

(단위: 천원)

회계연도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후 예산집행 상황 (금액, %)	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017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2,889,500	200,000		1,066,676 (91.2%)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예산 부족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70,000		200,000		

2016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회보수 장혜금	31,633	160	1,114,096 (99.5%)	독립유공자의 본인 및 유족의 의료비 지원 증가로 사업비 부족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수 장혜금	900	160		
2016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회보수 장혜금	31,473	60	114,096 (99.5%)	독립유공자 연료비용 하 여관수로 의료비 지원 가공자비 예산 부족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수 장혜금	1,060	60		
2015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회보수 장혜금	32,104	70	63,000 (90.0%)	광복70주년기념 사업추진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민간경 상사업 보조	542,000	70		
2015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회보수 장혜금	31,684	60	56,101 (93.5%)	독립유공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의 수 혜자인 독립유 공자 본인 및 유 족이 연료하 여관이용회 수로 12월 지 출액이 부족 함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수 장혜금	900	60		
2014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회보수 장혜금	32,299	80	76,065 (95.1%)	독립유공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12월 지출분 부족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수 장혜금	900	80		

○ 2014회계연도부터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매년 (감)변경하여 필요예산 충당하고 있는 바, 이는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예산집행의 엄정한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음.

- 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서에 담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법규·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을 집행부의 행정편의에 따라 부족 예산의 충당용으로 편성·집행한 행태는 의회의 예산 회계 통제권한을 명시적으로 침해하는 집행이라고 할 것인 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단순반복적인 예산변경을 막기 위한 보수적이고 엄격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 동 사업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분담비율(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에 따른 시비 분담금을 서울시교육청의 보조금 신청에 따라 교부하여 예산을 집행함.

※ 2015.7월부터 교육급여 집행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

- 2017회계연도 예산은 94억 7,379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7억 1,800만원을 감전용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고, 12억 4,086만원은 동일 세부사업 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국고보조금 변경내시-증액)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사업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현액	증감 현황		변경사용 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전용	변경사용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9,473,790	△718,000	△1,240,861	7,514,929	6,748,070	766,859 (10.2%)

-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감액 전용 및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27억 2,572만원으로 28.7%의 높은 불용률을 나타냄을 알 수 있음.
- 동 사업의 급여대상 모집단인 학령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수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 교육급여 대상자도 2016년 60,165명에서 2017년 52,877명으로 1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연도별 학령인구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7년	5,725,260	2,674,227	1,381,334	1,669,699
2016년	5,882,790	2,672,843	1,457,490	1,752,457
2015년	6,088,827	2,714,610	1,585,951	1,788,266
2014년	6,285,792	2,728,509	1,717,911	1,839,372
2013년	6,481,492	2,784,000	1,804,189	1,893,303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그런데 교육급여 예산액은 2016년 보다 2017년에 오히려 12억 5,023만원이 증액(15.2%) 편성됨으로써 실제 예측되는 추세 및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음.

**〈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연도별 예산액**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6	8,223,560	7,887,866	335,694 (4%)
2017	9,473,790*	6,748,070	2,725,720* (28.7%)

※ 2017년 예산액과 집행잔액은 (감액)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것임

- 비록 교육급여가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확보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사용을 위해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해 불용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3)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 사업 시행을 위한 편의적·임의적 예산 전용

- 집행부는 복지분야 정책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2017.09.21.)하여 「복지서울, 시민 성과대회」를 집행한 바,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 복지서울, 시민성과대회 행사개요 >

- ① 일 시 : 2017. 11. 18.(토) 10:00 ~ 18:00
- ② 장 소 : 서울광장,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③ 주 최 : 서울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복지재단 등
- ④ 참 석 : 시장, 복지 관련 단체·기관, 전문가, 시민 등 10,000여명
- ⑤ 행사내용
  - 민선 5·6기 서울시 혁신 복지정책 소개 및 체험 부스 운영
  - 민선 5·6기 서울시 복지정책 관련 패널, 시장과의 토크콘서트 진행
  - 4차 산업혁명과 미래복지 등 복지정책 관련 토론회 및 포럼 개최
- ⑥ 소요예산(안) : 200백만원 (사무관리비)
  - 박람회 관련 영상 시스템, 부스 및 무대설치, 테이블·의자 설치, 예술 공연 비용 등

- 집행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 예산 중 불용예상액을 아래와 같이 전용조치하였음.

〈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전용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현액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계					200,000	200,000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 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0		20,000	0	-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종합사회 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 자본보조	2,213,702		180,000	2,033,702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 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 관리비	182,700	200,000		382,700	전용

- 집행부는 전용 필요성과 관련하여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청년수당’과 ‘찾아가는복지 등’ 서울시 복지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그 성과를 정리하고, 복지 유관 단체의 지속적인 의견 공유의 장(場) 마련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박람회 및 시민보고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필요분을 확보하기 조치라고 해명하였음.
- 그러나 복지분야 정책 박람회 개최는 예산 편성 당시 수립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임의적인 예산 전용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이며, 201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됨.
- 또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관리비는 사회보장분야 심의·자문을 위해 분기별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반기별 서울시민복지기준사업 이행 평가를 위한 내부평가 및 외부위원회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통계목이라고 하겠음.

- 복지박람회 및 시민보고대회를 위한 예산은 별도의 통계목 설치로 반영되었어야 할 성격이라고 하겠으며, 집행부가 편의적·임의적으로 사무관리비 항목에 전용 조치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권의 남용이며 일탈로 비판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하겠음.
- 집행부의 예산변경권한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업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하겠음.
-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서의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고, 복지박람회 및 시민보고대회 개최를 위해 임의로 예산을 변경한 바,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집행부의 홍보성 성격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예산의 엄정한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4)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탄력적 예산 집행 필요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의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자치단체자본보조(시립의 복지관 기능보강과 긴급기능보강비)로 22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1억 8천만원을 (감)전용하고 1억 2천 6백만원을 불용조치(불용률 6.2%)하였음.
- 전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복지서울, 시민 성과대회」 개최를 위한 명목으로 (감)전용되었음.



〈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전용 내용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200,000	200,000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 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종합사회 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 자본보조	2,213,702		180,000	2,033,702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 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 관리비	182,700	200,000		382,700	전용

- (감)전용사유를 보면 마포종합사회복지관내 지하주차장 식당 기능보강사업(1억 8천만원)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 관계로 구체적인 설계 및 물량 산출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포기 및 추진불가를 마포구청측이 통보하여 불용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전용조치한 것이라고 집행부는 밝히고 있음.
- 집행부는 2004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 의뢰하여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능보강사업 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계가 아닌 약식 도면으로 심사하는 등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사항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누락하거나 등한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사업 선정에 있어서 보다 치밀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수요가 많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 인해 긴급기능보강비(포괄예산)에 대한 각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요청이 빈발하고 있는 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 홍보성 사업 등에

전용하거나 불용시키지 않고, 긴급기능보강사업비로 사용함으로써 현장의 수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 매칭 예산 협조 등을 통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5) 임의적 통계목 신설·전용·집행을 통한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 가)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은 각종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시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 ① 310명 시민위원회 운영 ② 33인의 3·1운동 100주년 추진위원회 ③ 서울시민 독립군 시민학교 운영 ④ 독립운동가 묘지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3·1운동 100주년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 2천 3백만원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시민학교 운영에 관한 2억 1천만원 등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천만원을 아래와 같이 (감)전용조치하였음.

〈표〉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전용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233,000	50,000	△50,000	233,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사무관리비	233,000		50,000	183,000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기타보상금	0	50,000		50,000

- 집행부는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에서 기타보상금 통계목을 신설하여 (증)변경조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으로 전액 충당하였음.

**<3.1운동·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

- ① 사업목적 : 3.1운동·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
- ② 사업기간 : 2017. 9월 ~ 12월
- ③ 수행기관 : 서울시 교통방송
- ④ 소요예산 : 50,000천원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할 것임.
- 전용 등 예산변경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함에 한정해야 할 것인 바, 새로운 성격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겠음.
- 집행부는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100주년 추진위원회 운영과 항일독립학교 시민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비롯하여, 그 외에 행사 운영비로 ‘310명 시민위원회 출범식 개최 및 위원회 운영’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독립운동가 묘지 등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었음.
-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은 새로운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집행부가 임의로 통계목을 신설하여 예산변경을 통해 비용을 확보하여 집행한 행태는 사실상 의회 심의권을 훼손한 행위라고 하겠으며,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예산집행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하겠음.

- 집행부 임의로 통계목이 신설·집행된다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비과학적·비합리적이며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 관행을 시정할 수 없으며, 예산이 갖는 재정계획기능, 정책관리기능, 회계통제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나)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사업

-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사업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역푸드뱅크 1개소 및 기초푸드뱅크 25개소, 기초푸드마켓 25개소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광역푸드뱅크·마켓 등 지원) 5억 4,264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15억 1,329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기능보강비) 4,450만원과 2017년도 신규 사업예산으로 연구용역비 2천만원, 시설비(광역푸드뱅크 이전 설계용역) 1억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직무조사 및 분석을 위해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2017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568, ‘17.1.12)<sup>1)</sup>에 정의한 ‘학술용역’의 성격보다 평가·조사 및 통계, 컨설팅 등을 주된 과업으로 하는 ‘일반용역’의 비중이 높다는 사유로 당초 의회에서 편성하지 않은 통계목을 신설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1) 학술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 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일반용역: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정보통신용역’ 이외의 용역 ※ 컨설팅, 단순 조사통계, 자료 수집 등은 일반용역으로 진행됨

-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지정협약이 2017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고 2017년 10월 1일자로 민간위탁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 또한 당초 의회에서 편성하지 않은 ‘민간위탁’ 통계목을 신설하여 변경하였음.

※ 2017년 6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 거침

-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예산 설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이는 바, 향후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이나 변경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표〉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사업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현황		변경 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 비	2,700			2,700	2,662	38 (1.4%)
	연구용역 비	20,000		△20,000	0		
	사무관리 비	0	20,000		20,000	17,037	2,963 (14.8%)
	사회복지 사업보조	542,643		△169,630	373,013	373,013	0
	민간 위탁금	0	169,630		169,630	110,601	59,029 (34.8%)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1,513,293			1,513,293	1,513,287	6
	시설비	100,000			100,000	0	100,000 (100%)
	자치단체 지분보조	44,500			44,500	44,500	0

- 위와 같이 변경된 민간위탁금 예산은 1억 6,963만원 중 1억 1,060만원을 집행하고 5,903만원(불용율 34.8%)을 불용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푸드나눔카페의 2017년 6월 30일자 업무 중단(업무협약 만료)과 관리자(2급) 퇴사로 인한 것이라고 불용사유를 설명함.
- 동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를 서울시는 예산투입 대비 나눔문화 활성화 효과 한계 등을 감안하여 푸드나눔카페 협약 갱신을 통해 연장하지 않고 폐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푸드나눔 카페 폐쇄 시 푸드마켓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기자 중 푸드나눔카페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음.

〈서울푸드카페 지원 현황〉

- ▷ '15년 시비지원액(98,070천원) 대비 수입액(79,676천원) 81.2%
- ▷ '16년 시비지원액(100,348천원) 대비 수입액(93,795천원) 93.5%

- ※ 서울교통공사가 장소 무상임차에서 유상임차 방식으로 입장 전환한 것으로 파악
- 2009년부터 운영되어왔던 푸드나눔카페의 폐쇄는 사업성과 저조로 인해 이어지게 된 결과이며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는 사례로, 해당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푸드나눔카페 운영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였던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 설계용역을 위해 2017회계연도 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 1억원은 전액 불용되었는데,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은 2014년도 서울시

의 ‘행복 4구 Plan’ 발표 및 ‘동북 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에 의해 추진되어 온 것으로, 2018년 말까지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을 완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전부지 미확정으로 인해 해당 설계용역비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였음.

- 적정부지 발굴 및 관련 기관 등과 조속한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임.

#### 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발달장애인 부모회의 2015년과 2016년 시청 점거 농성시 요청된 사항 중 하나이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개소(자치구 공모 지원)와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서울시 공모 선정) 지원 예산으로 2017년도 신규로 8억원(기초 5억, 광역 3억)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예산과목을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을 신설하여 과목 변경사용 하였음.

〈표〉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과목변경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 현황		변경 후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세부 사업	통계목		증	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0	300,000	-	300,000		
	사무관리비	300,000	-	△300,000	0	161,623	138,377 (46.1%)

- 집행부는 광역 단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후 사업 검토를 통해 기초 단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지역 가족지원 서비스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당초 의회에서 편성하지 않은 통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전용하였음.
- 또한 이러한 사업 계획이 5월에 수립되고 실질적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7월부터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 예산의 절반가량(46.1%)이 불용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도 광역 센터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 5억원 중 1억 9천5백만원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중증장애인연금)으로 변경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예산 변경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현황		변경 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500,000		△195,414	304,586	304,074	512 (0.2%)

※ 감액 예산은 동일 단위사업 내 중증장애인연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사용

-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총 8억원의 예산 중 41.8%인 3억 3,430만원(광역센터 138,377천원, 지역센터 195,926천원)이 불용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사용되었음.
- 이와 같이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하여 당초 의회에서 편성하지 않은 예산 과목을 신설하거나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높은 불용율을 나타내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임.
-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요구(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 예산 편성시 사업 설계 및 사전절차 이행 등 집행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의 높은 불용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맞추어 사전에 복지수요와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충분한 검토와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것임.

라)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추가공사에 따른 예산 전용(거리노숙인 보호 사업)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7017 서울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6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임.
-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축공사 설계 변경하여 시행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본부의 거리노숙인 보호 사업 내에 통계목을 신설하고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예산에서 1억 8,538만원을 전용하였음.
- 동 사업은 노숙인 시설을 리모델링한 것이기는 하지만 ‘7017 서울로’ 설계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주도로 2016년 10월에 계획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족 예산에 대해 당초 의회 의결로 편성하지 않은 통계목을 복지본부 세부사업 내에 신설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재배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사례로 이러한 사업 추진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추가공사 관련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7,493,295		△223,380	7,269,915
		거리노숙인 보호	시설비	-	185,380		185,380
			민간대행 사업비	68,700	38,000		106,700

※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한 3,800만원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현장 방문 시 (2017.2.28.) 시설 건의 사항인 에어컨 및 CCTV 설치를 위한 것임.

## 6) 안일한 추경예산편성 및 행정편의적 예산변경

- 집행부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업을 세부사업 신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증)변경사용으로 1억 7천 4백만원을 확보하여 1억 1천 5백만원을 불용처리 (불용률 66.4%)하였음.

〈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예산변경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및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 서비스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사회 복지 사업보조	908,228 (X438,053)	-	173,936 (X86,968)	734,292 (X351,085)
		학 대 피 해 노인전용쉼터 운영	사회 복지 사업보조	-	173,936 (X86,968)	-	173,936 (X86,968)

-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증설계획(2016.12.12.)’에 따라 집행부는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신규 확충신청(2016.12.22.)’을 통해 ‘서울 북부지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전용쉼터’)사업이 국고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 조정 결과를 통보(2017.01.04.)함에 따라 전용쉼터 신설을 위해 1억7천3백만원(국고지원금 8천6백만원 포함)을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음.
- 그러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전용쉼터’) 세부사업을 신설하지 않고, 노인 전문보호기관 운영사업비 항목에서 추경안을 편성한 바, 보건복지부의 사업명

불일치를 지적받음에 따라 세부사업(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을 신설하고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라고 하겠음.

- 2017년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용쉼터가 없는 관계로 심신치유 및 학대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어 피해노인을 보호해야 하지만,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시설은 일반 노인이 이용하는 요양원과 양로원을 겸해 운영하고 있어서 학대피해노인과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비밀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전용쉼터 운영계획

- ① **쉼터설치** : LH 공사 장기전세 임대(강북구 수유동 소재)
- ② **지정 및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③ **입소대상**
  - 만 60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입소우선 순위 : 응급사례(1순위), 비응급사례(2순위), 잠재사례(3순위)
- ④ **세부 주요사업**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보호기간** : 4개월 이내 ※ 재입소 시, 연간 총 6개월 이내
- ⑥ **종사자** : 6명
- ⑦ **입소인원** : 5명 (현재 입소 4명)

- 검토하건데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논의(2016.12.)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사업계획을 확정(2017.0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편성된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사업에 포괄하여 집행하고자 추경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받은 것은 세부사업명 불일치에 따른 국비 교부 집행 불가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사료됨.
- 집행부는 기편성된 예산과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신규사업 간의 불일치 여부를 보다 세밀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추경안 편성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무엇보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세부사업 신설과 예산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사업 신설에 대한 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전용쉼터와 관련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돌봄 영역에서의 역할 축소는 가족구성원의 노인 돌봄으로 인한 소진과 함께 책임을 포기하는 형태에서 더 나아가 어르신 부양부담을 둘러싼 갈등으로 어르신 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표〉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신고 및 사례판정**

- 학대피해 신고·상담 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총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접수(명)	5,974	1,060	911	865	976	1,061	1,101
상담건수(회)	58,472	5,998	8,544	9,544	9,739	11,591	13,056

- 전용컴퓨터의 규모(당초 운영계획상 입소정원이 9명이었으나, 5명으로 축소되었음)와 학대 피해노인 발생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피해 노인의 치유와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 확보 및 상담 인력 배치가 요망된다고 할 것인 바,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7) 방만한 예산안 편성 및 행정편의적 예산변경**

- 집행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어르신과 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의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에 169억 4천만원을 기편성한 바, 추경예산안을 통해 5천만원을 증액하여 16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아래표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 169억 9천만원에서 6천 7백만원을 (감) 전용하고 1천 1백만원을 (감)예산변경하였으며, 7억 5천 2백만원을 불용조치(불용률 4.4%)하였음.

〈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 수준향상 및 장상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 어르신 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 지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17,185,696		20,000	1,738,596
				16,993,130		46,770	16,946,360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기초생활보 장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122,530	20,000		142,530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 보조	3,986,922	46,770

○ 전용사유를 보면 어르신복지시설보강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17.11.09)로 인해 시비 매칭사업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전용(46,770천원)조치 하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추가 예산 확보 필요에 따라 전용(20백만원) 조치하였음.

〈표〉 2017년 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집행시기	금액	비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지원사업 (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122,530 (62,530)	1/4분기	19,905	◦ 3/4분기 까지 73,127천원 집행
		2/2분기	25,422	
		3/4분기	27,800	◦ 예산잔액 10,607천원
		4/4분기	30,075	

○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인해 시비 매칭예산 추가 확보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예산변경되었음.

〈표〉 재가노인복지인시설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변경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 서비스확대	재가노인 복지 시설 운영	사회 복지 사업 보조	16,993,130		11,000	16,982,130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사회 복지 사업 보조	743,274	11,000		754,274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사업 내역을 보면 데이케어 (210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28개소), 치매(등급자·등급외자) 전용 데이케어센터 및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와 치매등급 어르신을 비롯하여 등급외 치매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함에 주된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업무 분석과 수요 파악을 통해 필요 재원을 산출하여 엄격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한 통계목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방만한 예산 편성을 통해 행정편의적인 예산변경 운용 실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국고보조금 변동을 면책사유로 활용하여 방만한 예산 집행을 하는 행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의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는 예산 집행의 정당성·민주성 확보와 직결되는 바, 집행부의 반복되는 국고보조금 변동(특히 11월과 12월 연말)을 사유로 한 예산변경 조치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8) 폭넓은 간주처리규정으로 형식적 절차로 간주되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

-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적 기업·비영리 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여 장년층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사업’과는 다르게 국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어르신일자리사회공헌사업 사업개요

- ① 사업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②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경력 3년 이상 퇴직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참여 희망자
- ③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월 120시간 이내(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④ 지원금액 : (실비)1일 4시간 이상 8천원 4시간 미만 3천원 (수당) 2천원/시간  
※ 월 20일간 일6시간 활동시 최대 40만원 지급 가능(실비 16만원, 수당 24만원)
- ⑤ 사업량: 585명

- 본 사업은 2017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응모(2016. 10. 21.)한 바, 고용노동부의 심사결과 서울시가 선정(2017. 2. 7)되어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2017. 4. 10.)이 내려졌음.

〈표〉 고용노동부 교부결정내용('17.4.10)

(단위: 천원)

지자체명	확정내시액	교부요청액	교부액	비고
서울특별시	540,000	540,000	540,000	
노원구청	83,000	83,000	83,000	
서대문구청	68,000	68,000	68,000	
합계	691,000	691,000	691,000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내려졌으나, 2017회계연도 본예산에는 해당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행부(예산담당관)는 예산총칙 간주처리 규정에 따라 세부사업(어르신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세입·세출 예산으로 처리하였음.

〈표〉 간주처리에 따른 세부사업 신설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고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설)	계	(×978,000) 1,169,000	(×691,000) 691,000	
		사회복지사업보조	(×827,000) 1,018,000	(×540,000) 540,000	예산현액 9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1,000) 151,000	(×151,000) 151,000	노원구 83백만원 서대문구 68백만원

- 중앙정부 국시비 매칭사업인 어르신일자리사회공헌사업은 사업비가 9억원이므로 매칭비율(국비 60%, 시비 40%; 국비 540백만원·시비 360백만원)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바, 시비부족분(3억6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예산변경(2017. 5. 16.)을 통해 시비부족분(3억6천만원)을 아래와 같이 예산현액(9억원)으로 계상하였음.

※ 시비 매칭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금 151백만원(노원구 83백만원, 서대문구 68백만원)이 서울시로 교부된 바, 이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음.

〈표〉 세출예산 편성내역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은퇴 후 제2인생 설계 지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 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35,616,827) 77,169,793		(×-) 360,000	(×35,616,827) 76,809,793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540,000) 540,000	(×-) 360,000		(×540,000) 900,000

- 검토하건데 어르신일자리사회공헌사업과 같이 당초 기정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중앙정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반영한 간주처리 규정을 활용하여 세부사업을 집행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음.

〈표〉 간주예산 편성 상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본예산	추가경정 예산	간주예산	계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3,097,728	2,813,067	4,801,846	630,712,641
희망복지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401,500	0	2,547,000	14,948,500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4,862,516	0	50,958	4,913,47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6,112,087	0	72,777	6,184,86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435,108	0	48,457	483,565
어르신복지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53,876	0	11,738	265,614

어르신복지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734,292	173,936	8,982	917,210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334,105	434,010	39,701	8,807,816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0	478,000	540,000	1,018,000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151,000	151,000
인생이모작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607,157	1,469,108	170,000	12,246,26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89,544,905	0	199,317	89,744,22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839,196	0	13,539	2,852,73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8,045,170	10,763,774	2,636,636	191,445,58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수당 차상위 등(국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1,208,562	0	157,855	11,366,417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203,903	0	1,374,000	106,577,903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72,800	0	10,560	183,360,
자활지원과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6,351,672	0	80,000	6,431,672
자활지원과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	0	7,250	7,250
자활지원과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	민간대행사업비	1,252,288	0	3,150	1,255,438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106,845	-265,533	91,763	6,933,075
자활지원과	희망키움통장 I·II	사회복지사업보조	5,861,791	0	1,469,104	7,330,895

- 간주규정에 따른 경우 국·시비 매칭 비율에 의거하여 부족시비분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른 세부사업(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등)에서 일부 감액하여 확보하는 내용의 예산변경을 통해 신설된 세부사업의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간주처리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 간의 물리적 시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하여 마련한 예외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제45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의 예산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시급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간주처리규정을 확대해석할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사유로 예산 사업을 과도하게 신설한다면, 지방의회가 결산심사에서 계상된 예산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어려워지고 실질적인 예산 심의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 중앙정부와 단독으로 상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일부 지방비 부담 사업을 무분별하게 간주처리규정으로 예산에 편입할 경우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감안해야 할 것임.

## 2017회계연도 예산총칙 간주처리 규정

제10조 2017년에 한하여 연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지방의회가 예산심의·의결권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가 그 심의·의결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주처리규정’은 사실상 집행부의 임의적·자의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용인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간주처리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의회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간주처리규정을 폐지하더라도 ‘성립전 예산사용’을 통해 의회의 예산 심의이전에 탄력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조기집행 한시적 운영 - 행자부 공문(2.12일, 9.2일)

▶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까지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가능 ('16. 1. 1 ~ 6. 30일, '16. 9. 2 ~ 12. 31일)

※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 9) 엄정한 사업 집행 필요

### 가)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사업

- 2007년 개관한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은 서울시에 있는 농아인복지관 3개소 중 유일한 시립 복지관으로, 시설 면적이 993m<sup>2</sup>) 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공간으로 인해 정보제공, 재활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농아노인 센터 설치 요구, 부족한 시립 어르신요양시설 확충 요구 등에 따른 대책으로 복지관 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15년 8월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2016년~2017년 별관부지 매입 과정에서 가격협상이 2차례 결렬되어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의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음.

※ 당초 2018년 12월까지 복지관 별관 건립 완료 계획이었으나, 2020년 12월까지로 기간 연장

- 이에 따라 명시이월('16년→'17년)된 예산 중 토지매입비로 사용된 예산 이외에 공사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억 2,100만원은 모두 불용처리 되었으며, 토지매입비로 사용된 20억 1,440만원 중 10억 1,440만원을 지출하고 10억원은 사고이월하였음.

---

2) 서울 소재 장애인복지관 46개소 평균 연면적 2,908m<sup>2</sup>에 미달, 9개 시립복지관 평균면적(3,125m<sup>2</sup>)에 비해 30% 정도, 청각장애인복지관인 청음회관(1,470m<sup>2</sup>) 및 삼성소리샘복지관(4,957m<sup>2</sup>)의 연면적보다 작음(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건립 투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자료 참조)

〈표〉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예산현황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명시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 이행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세부 사업	통계 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시립 서대 문 농아 인 복지 관 별관 건립	시설비	200,000	500,000	700,000	0	0	200,000		500,000 0 (71.4%)
	감리비	32,000	20,000	52,000	0	0	32,000		20,000 (38.5%)
	시설부 대비	2,600	1,000	3,600	0	0	2,600		1,000 (27.8%)
	자산및 물품취 득비	0	2,095,735	2,095,735	2,014,402	1,014,402		1,000,000	81,333 (3.9%)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해 건립 완료 기간이 2년이나 지연되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증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필요예산의 불용과 복지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추가적으로 가능한 대책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하겠음.

나) 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사업

- 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은 1997년 개관되어 개관 당시보다 이용인원이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공간이 좁아 정보제공, 재활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증축사업(기존 2층→ 3층)을 추진함.



- 동 사업은 2016년에 시작하여 2018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2016회계연도 예산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편성하였다가 증축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동일 세부사업 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통계목을 신설하여 변경사용 하였는데, 2016년 12월 설계발주하여 설계비 1억 2,700만원을 사고이월(3억 7,800만원은 불용/2016년 예산)시켜 2017년도에 지출하였음.

〈표〉 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관련 예산현황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사고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유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0월액		불용액 (불용)
세부사업	통계목						명 0월	사고 0월	
시립 북부장애 인복지관 증축	시설비	150,000		150,000	0	0	150,000		0
	감리비	31,163		31,163	0	0	31,163		0
	시설부 대비	15,000		15,000	598	598	14,402		0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	시설비	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0

-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증축공사를 의뢰하여 추진하면서 설계 결과 공사규모 증가로 계획이 변경되고 투자심사 대상(사업비 30억 초과)이 되면서 사업 일정이 당초 2018년 2월까지였다가 2018년 12월까지로 지연된 것임.
- 2017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거쳤는데, 설계 이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비 증액 요청에 따른

검토('17년 6월~8월)를 하면서 다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2017회계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일부(598천원)을 제외하고 모두 명시이월 하였음.

- 사업의 특성상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계획 변동이 발생될 수도 있겠으나, 동 사업은 최초 사업 계획수립 당시 추진 방향에 대한 설계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면서 계획이 변동되고 복지관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증축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 동 사업이 노원구 및 인근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도 밝힌 것과 같이, 향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이상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 다)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

-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은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에 대하여 기초 건강검진 실시 및 결핵·독감 등 전염성 질병예방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상태 증진 및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 사업임.
-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의 경우 10억 8,289만원의 예산 중 8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2억 5,689만원이 불용(불용율 23.7%)된 것으로 나타남.

〈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조사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전용	변경 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계	4,834,071			4,834,071	4,571,913	262,158	5.4%
의료및구료비	3,706,172			3,706,172	3,700,908	5,264	0.1%
사회복지 사업보조	1,082,899			1,082,899	826,005	256,894	23.7%
민간대행 사업비	45,000			45,000	45,000	0	0%

- 동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은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비로, ‘무료진료소 인건비, 공중보건의 장려금, 운영비, 무료진료소 전문의 채용(3명)’ 예산으로 편성됨.

**사업개요**

- ① 사업명 : 무료진료소(2개소) 운영비 지원
- ② 운영현황 : 2개소(서울역 진료소/ 영등포 진료소)

서울역 진료소(대한성공회유지재단)			영등포 진료소(대한불교조계종재단)		
위탁기간	근무인원(명)	진료/1일	위탁기간	근무인원(명)	진료/1일
	계 : 8			계 : 5	
'16.1.1 ~'2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보건의 2</li> <li>• 간호사 3</li> <li>• 사회복지사 2</li> <li>• 사회복지무요원 1</li> </ul>	77명	'14.1.1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보건의 1</li> <li>• 전문의(외과) 1</li> <li>• 간호사 1</li> <li>• 사회복지사 2</li> </ul>	30명

- ③ 사업내용
  - 거리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대상 진료 및 투약
  - 내방노숙인 상담, 시설입소 안내, 진료범위 초과시 병원진료 의뢰
  - 결핵환자 및 영양환자 관리(주거 및 식사 제공, 투약관리, 상담 등)

- 집행부는 동 예산 불용사유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 의사 재배치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설명함.
  -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노숙인 무료진료소 공중보건 의사 ‘배치 제외’ 결정 (다만, 공중보건의 수급상황에 따라 '17년 한시배치-보건복지부 2017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하여 서울역·영등포 무료진료소 전문의 3명 채용 인건비 3억 5,23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 2017.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역 무료진료소 공중보건 의사 2명이 (한시)배치 통보됨 따라 전문의 2명은 미채용하였으며, 영등포 무료진료소는 전문의 1명을 채용('17.4월) 하였음.
- 집행부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공중보건 의사가 재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절감된 측면이 있다고도 보이나, 공중보건 의사 재배치 통보 시기가 4월인 점을 감안할 때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예산에 대해 7월 실시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감액 조치 할 수 있었음에도 반영하지 않아, 이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점에 있어 짚어 보아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무료진료시설 공중보건 의사 배치 기준을 2017년도부터 ‘수급상황에 따라 한시 배치’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노숙인 무료진료소 공중보건 의사 지원을 통한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임.

※ 2018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중보건 의사 제도는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문의 채용 등의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나. 예산 불용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예산편성시 반영 필요

### 1) 사무관리비 과대 편성 사례

- 장애인복지정책과 세부사업 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불용액 미발생 사업 제외), 총 3억 9,490만원 중 2억 9,344만원을 집행하고 1억 146만원이 불용(불용율 25.7%)되어, 그 금액과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표〉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관리비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세부사업	통계목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26,325	112,840	13,485	10.7%
장애인단기거주 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8,375	10,355	8,020	43.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04,000	75,903	28,097	27.0%
장애인복지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7,200	54,298	12,902	19.2%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0	10,000	100%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4,000	35,745	18,255	33.8%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사무관리비	10,000	0	10,000	100%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00	4,297	703	14.1%
합계		394,900	293,438	101,462	25.7%

※ '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중 불용액 발생 사업만 작성

- ①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②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사무 관리비의 경우 각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전액 불용되었는데,
  - ①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사무관리비는 영문홈페이지 번역비로 편성되었는데, 영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문자가 적고(국문 사이트 대비 영문 사이트 방문자 비율 4%대, 2014년~2016년) 예산 투입 대비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미집행 하였으며,
  - ②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엔젤아이즈 앱과 엔젤아이즈 도우미 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장애인을 위한 행사시(장애인의 날 및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스를 별도 운영하는 등으로 대체하였다는 집행부의 설명임.
- 43.6%의 높은 불용율을 나타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의 경우 주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교육 비용임.
-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의 경우 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원 수당으로 편성된 것인데, 33.8%의 높은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음.
- 불용금액이 2천8백만원인 바,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의 경우 탈시설정책 협치사업 운영 비용인데, 집행부는 당초 계획되었던 자문회의를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대체하여 진행(민관협의체 5회, 협치사업단 8회)하였으며 모니터링 활동 비용 및 업무가이드 제작 비용 절감 등을 불용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 상기 불용사유들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이라기 보다는 예산편성 당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정확한 수요 파악 등 충분한 사업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많다고 보이는 바, 비교적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사무관리비가 방만하게 편성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집행부 각 부서에서 향후 예산 편성 시 공통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임.

## 2)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사업은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수련시설을 강원도 양양군 해변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지역인 양양군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년간 시설을 건립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 사업 예산인 공사 설계비 7억원이 2017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 〈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사업비 연도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2015	700,000		700,000	-		○불용사유: 사업시행 지역인 양양군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 중단 ○향후대책: 건립반대 지역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현 부지에 건립 추진
2016	700,000		700,000	-	700,000	
2017	0	700,000	700,000	-		○불용사유: 사업시행 지역인 양양군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 중단 ○향후대책: 건립반대 지역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

- 동 사업은 2009년 6월에 최초로 장애인수련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대상부지를 매입한 이후, 양양군 지역주민의 시설 건립 반대로 건축협의 취소 처분 관련 소송 진행(대법원 재판 결과 서울시 승소), 건립계획 및 건립부지 변경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왔으나, 2018년 현재까지 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산 편성 후 불용을 반복해 왔음.

<양양군 건축협의 취소처분에 따른 소송 추진 경과>

- ▶ 건축협의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2심(2012. 9. 26.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누640) 서울시 승소
- ▶ 3심(2014. 2. 27. 대법원 2012두22980) 서울시 승소

- 이에, 2015년 결산 시에도 사업 집행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편성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한 바 있고, 이후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으나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양양군 지역주민의 58억여원에 이르는 지원 요구(해변 내 부대시설 설치, 둘레길 조성 등)로 서울시의 동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지나치게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및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임.



### 3)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룸통장’ 사업)은 중증장애인 미래 자산형성, 자립생활을 위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6년 발달장애인 부모회 시청 점거 농성시 서울시에 지원 요청한 핵심사항이었으며, 2017회계연도 사업예산으로 20억원(전액 시비)이 신규로 편성된 것임.
-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7년 8월 동 사업비의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았음.
- 시의회 출연 동의 당시 집행부는 ‘이룸통장’ 사업 지원자 모집인원을 1000가구로 설정하고 2017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차년도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sup>3)</sup>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연도내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2017회계연도 사업비로 편성된 20억원을 전액 불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4)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자활작업장)

○ 쪽방상담소 자활작업장 운영 사업(‘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중 하나임)은 취업이 어려운 쪽방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5~10명이 참여하는 자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 2018년 현재 지원대상 쪽방상담소 자활작업장은 4개소인 것으로 파악되며, 그동안 (2017년~2018년 2월) 2개소는 참여자 부진 등의 사유로 폐쇄된 바 있음.

○ 2017년도에 자활작업장 1개소를 추가하고자 자활작업장 리모델링비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 집행부에서는 동의동 쪽방주민을 위한 손두부 공장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높은 월세 등의 이유로 쪽방촌 인근에 작업장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불용사유를 설명하였음.

※ 민간단체의 공동체 자체 운영 손두부 공장 자활작업장 사례 있음

○ 이러한 자활작업장 운영은 장소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 여건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의욕이 앞선 것에 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 지원 시책(일자리 대장정)에 따라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실제 집행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 자활작업장 운영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지원하는 작업장 수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폐쇄한 작업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 목적에 따라 쪽방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향후 성공적 사업 시행을 위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업

-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업은 시설 입소 노숙인들에 대하여 숙식제공, 상담·직업훈련 및 자활프로그램 등으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17회계연도 지원 대상 노숙인 자활시설은 시립 3개소, 법인운영 22개소임.
- 2017년도 예산은 총 116억 9,246만원으로 시설 운영비(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와 기능보강비(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음.

### 〈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조사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계	11,692,467	△223,380	11,469,087	10,597,593	871,404	7.6%
사무관리비	36,640		36,640	25,360	11,280	3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400		9,400	9,306	94	1.0%
민간위탁금	3,678,704		3,678,704	3,541,789	136,825	3.7%
사회복지사업보조	7,493,295	△223,380	7,269,915	6,713,687	556,228	7.7%
민간자본사업보조	289,328		289,328	122,351	166,977	57.7%
민간대행사업비	185,100		185,100	185,100	0	0

○ 동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2억 2,338만원은 감전 용하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외관 공사 등에 사용하였는데, 2016년 12월 자활 시설 1개소를 폐쇄(25개 → 24개)함에 따라 예산불용이 예상되어 동 예산을 감전 용한 것으로 파악됨.

※ 폐쇄된 시설 : 정릉희망의집(종사자 4명, 정원 30명, 연예산 271백만원)

- 이는 2016년 12월에 시설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예산으로 편 성하여 감전용한 사례로, 다음연도에 집행될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편성 당시 폐쇄가 예상 또는 진행된 시설을 포함하여 예산 을 편성한 후 해당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임.

○ 또한 노숙인 자활시설 기능보강비로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자원)의 경우 2억 8,833만원 중 1억 2,235만원을 지출하고 57.7%인 1억 6,698만원을 불용하였 는데, 예산 편성 시점(전년도)과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점(당해년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집행부의 불용사유를 감안하더라도, 불용율이 너무 높을 뿐 아니라 해당 사업 계획 및 선정 심의가 2017년 8월에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사업 추진 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최근 몇 년간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를 제외하고 감전용이 있어 왔는데, 감전용 예산을 불용액으로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해마다 10 억~13억('14년 9억7천, '15년 13억 4천, '16년 13억 2천) 정도의 불용(불용율 10% 내외)이 있어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노숙인 자활시설 이용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좀 더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2014	(x123,390) 11,865,449	(x-) △500,802	(x123,390) 11,364,647	(x118,380) 10,889,860	(x5,010) 474,787	4.1%
2015	11,443,716	△267,937	11,175,779	10,103,440	1,072,339	9.6%
2016	12,028,552	0	12,028,552	10,707,387	1,321,165	10.9%

<최근 3년간 노숙인 자활시설 이용 인원 현황>

- ▷ 2016년 25개소 정원 1,377명/ 현원 1,045명('15년도 연평균 이용 인원)
- ▷ 2017년 25개소 정원 1,377명/ 현원 1,017명('16년도 연평균 이용 인원)
- ▷ 2018년 24개소 정원 1,355명/ 현원 965명('17년도 연평균 이용 인원)
- \* 생활인 입소 추이 1,045명 → 1,017명(△28명) → 965명(△52명)

6) 집행잔액 1억 이상 사업

- 집행부의 예산사업 중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써 민생과 관련 있는 중요 사업의 불용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1억원 발생현황·사유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145,702	139,163	6.49%	○ 불용사유: 기능보강 타당성검 토결과(서울복지재단)반영사업비 감소정으로 집행잔액발생 ○ 향후대책: 추가사업지원(긴급기능보강 등)을 통한 보조금 집행율 제고
베이비부머	7,006,000	666,290	9.51%	○ 불용사유: 하반기추경(3,000백만원)편

보람일자리 지원				성 이후 참여자 모집 지연,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상반기 중 신속집행, 참여자 활동관리(중도포기방지) 강화 및 신속한 결원 충원 등을 통한 집행잔액 최소화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3,814,607	262,949	1.90%	○불용사유:경로당특화프로그램기반조성 사업은 자치구 사업계획서에 의거 신청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사업 신청금액과 예산불일치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 시 공동주택 경로당 제외함에 따라 집행잔액발생 등 ○향후대책:경로당특화프로그램 및 냉난방비, 양곡비지원산출기준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3,166,123	821,669	25.95%	○불용사유: 자립생활주택 신청이 예상대비저조하여 신규 주택확보비용 및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예산수요및방향에대한구체적 분석을통해정확한예산계획및편성노력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1,701,971	130,154	7.65%	○불용사유:정부추경에따른가내시료예산편성후,확정내시금액은감소되었으나,우리시감추경에반영하지못함(※실제예산 1,626,723천원기준집행률96.6%) ○향후대책:사업안내및예산적정추계로집행잔액최소화
장애인수화 통역센터 운영	9,209,615	491,415	5.34%	○불용사유:①센터인력,통역사채용곤란으로인건비예산불용(2.3억원) ②농아인쉼터 조성 면적이 예상보다 적어 사업비 불용(2.6억원) ○향후대책:통역인력추가배치및쉼터조성확대를통해집행잔액최소화
노숙인 일자리지원	8,033,447	363,554	4.53%	○불용사유: 시설일자리계획에따라 집행되고있으나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민간일자리로의 도중 취업으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시설및거리노숙인들의민간일자리가어려울노숙인을기초생계비를마련할수있는공공일자리의폭을확대
--	--	--	--	---

- 이외에도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불용액: 45억 3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불용액: 28억 2천만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지원(불용액: 1억8천만원), 어르신생활시설운영(불용액: 10억 8천만원), 기초연금 지급(불용액: 134억 4천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불용액: 19억),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불용액: 20억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용지원(불용액: 5억 3천만원) 등이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의 불용발생 사유를 보면,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대상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하기 보다는 전례답습적인 예산추계치를 활용함에 따라 실수요자와의 격차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이라고 하겠음.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집행노력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사장 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 심사시 삭감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3 기금 운영 관련

- 2017회계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3,233억 3천 3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3,264억 5천 3백만원)보다 31억 1천 8백만원(0.01%) 증가한 것으로써 2개 기금(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4개 계정(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구호계정)이 운용되었음.

#### 〈표〉 복지본부 기금 현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6	2015
회 계 연 도 말 현 재 액	323,335	326,453	321,318

- 융자금(이자 포함) 수입은 직접회계연도보다 6억원 감소하고 이자수입도 10억원 감소한 바, 저금리로 인한 기금 이자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의 기금 운영지출규모는 102억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67억원 증가한 바, 고유목적사업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17억원 증가한 41억원 이고, 융자금 지출은 직전회계연도보다 49억원 증가한 61억원이며, 내부거래 지출인 예탁금이 전년 대비 1,647억원 감소하였음.(다음 표 참조)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주요항목	2017	2016	증 감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326,454	321,318	5,136
	예치금잔액	29,894	14,758	15,136
	예탁금잔액	296,560	306,560	△10,000
<b>운용수입</b>	<b>합계</b>	<b>201,744</b>	<b>33,468</b>	<b>168,276</b>
당해 연도 조성 ②	소 계	7,110	8,710	△1,600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714	3,321	△607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4,298	5,300	△1,002
	기타수입	98	89	9
예탁금원금회수		164,740	10,000	154,740
예치금회수		29,894	14,758	15,136
<b>운용지출</b>	<b>합계</b>	<b>201,744</b>	<b>33,468</b>	<b>168,276</b>
당해 연도 사용 ③	소 계	10,229	3,574	6,655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4,098	2,365	1,733
	융자성사업비	6,115	1,197	4,918
	기본경비	16	12	4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191,515	29,894	161,621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323,335	326,454	△3,119
	예치금(사고이월포함)	191,515	29,894	161,621
	예탁금	131,820	296,560	△164,740

〈표〉 용자금 회수 사유

(단위 : 백만원)

계정	용자금 회수			증감 사유									
	2017	2016	증감										
합계	2,714	3,321	△607										
장애인복지계정	1,837	2,892	△1,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자금 회수는 중증장애인전세보증금을 최장 6년간 지원되는 사업비를 회수하는 금액과 조기 상환액으로,</li> <li>•'17년 만기 회수액('11년 지원액 1,170백만원)이 '16년 만기 회수액('10년 지원액 2,410백만원) 대비 1,240백만원 감소했으며,</li> <li>•또한, 조기 상환액은 '17년 667백만원으로 '16년 482백만원 대비 185백만원 증가하여 발생한 차액임(△1,240+185=△1,055)</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 도</th> <th>용자금 회수</th> <th>회수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16년</td> <td>2,892백만원</td> <td>- 2010년 지원액 37건 240백만원 - 조기 상환액 16건 482백만원</td> </tr> <tr> <td>2017년</td> <td>1,837백만원</td> <td>- 2011년 지원액 19건 1,170백만원 - 조기 상환액 13건 667백만원</td> </tr> </tbody> </table>	연 도	용자금 회수	회수내용	2016년	2,892백만원	- 2010년 지원액 37건 240백만원 - 조기 상환액 16건 482백만원	2017년	1,837백만원	- 2011년 지원액 19건 1,170백만원 - 조기 상환액 13건 667백만원
연 도	용자금 회수	회수내용											
2016년	2,892백만원	- 2010년 지원액 37건 240백만원 - 조기 상환액 16건 482백만원											
2017년	1,837백만원	- 2011년 지원액 19건 1,170백만원 - 조기 상환액 13건 667백만원											
자활계정	877	429	4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관련 지원한 용자금 조기 상환됨</li> </ul>									

〈표〉 이자수입 10억원 감소 사유

(단위 : 백만원)

계정	이자수입			증감 사유
	2017	2016	증감	
구호계정	3,508	4,482	△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예금이자수입은 증가(454), 예탁금이자수입 감소(△1,428)</li> <li>- '16년 : 예치금(16,180), 예탁금(259,740)에 대한 이자</li> <li>- '17년 : 예치금(177,226), 예탁금(100,000)에 대한 이자</li> <li>※ 공공예금 이자지급(1,3,7월), 예탁금 이자지급(3,6,9,12월)로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는 다음연도 1월에 반영</li> </ul>

〈표〉 예탁금 원금회수 변경 사유

(단위 : 백만원)

계정	예탁금 원금회수			원금회수 증가 사유 (구체적)
	2017	2016	증감	
합계	164,740	10,000	154,740	
노인복지계정	1,000	0	1,000	•'18년 노인복지계정 신규사업 추가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용자지원 사업비(100백만원) 확보를 위해 예탁금 원금 회수 조치함
자활계정	4,000	0	4,000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4개 시설 195호에 용자금을 지원하여 줌
구호계정	159,740	10,000	149,740	•'14년 감사원지적사항(재정투융자기금 관리→별도 계좌 개설 관리)에 따라 예탁금 상환 중

〈표〉 기금 현황 (당해연도말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6	증감액	주요 원인
사 회 복 지 기 금	46,109	50,534	△4,425	
노 인 복 지 계 정	13,997	14,503	△506	2016년도(832백만원) 대비 사용액 감소에도 저성장 국면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입 감소 등에 따라 총 조성규모 감소
장 애 인 복 지 계 정	24,588	24,961	△373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17년 만기 회수액 및 이자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기금조성 규모 감소
자 활 계 정	7,524	11,070	△3,546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 사용 증가
재 난 관 리 기 금	277,226	275,920	1,306	
구 호 계 정	277,226	275,920	1,306	

- 2017회계연도의 기금 중 고유목적사업은 당초 지출계획현액 136억 6천만원 중 24.9%인 102억 1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 33억 8천 8백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24.9%)이 미집행되었음.

〈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미집행액	미집행률	
합 계	21	13,601	10,213	0	3,388	24.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0	811	768	0	43	5.3%
	장애인복지계정	2	3,700	2,684	0	1,016	27.5%
	자활계정	6	5,268	4,559	0	709	13.5%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	3,822	2,202	0	1,620	42.4%

-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기금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구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금운영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재할용된다는 점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지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7회계연도 기금용자사업은 당초 지출계획현액 78억원의 22.0%인 16억 8천백만원이 미집행된 바, 2016회계연도(불용률 54.0%)와 비교하여 지출계획후 집행되지 못한 불용규모가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금의 성격상 불용액이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재할용되는 특징이 있으나,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불용예상액을 예치금이나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변경하여 이자 수입을 증가시키는 수익창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기금별 융자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사회복지기금	계	2	7,800	6,115	0	1,685	22.0%
	장애인복지계정	1	3,000	1,993	0	1,007	33.6%
	자활계정	1	4,800	4,122	0	678	14.1%

- 다음 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노인 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사업’에서 지출계획현액(1억 8천만원) 대비 34%인 6천 6백만원이 불용되었고,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광역자활사업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서 지출계획현액(1억9천6백만원) 대비 15.8%인 3천만원이 불용되었음.

〈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b>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10개)</b>	<b>811</b>	<b>768</b>	<b>0</b>	<b>43</b>	<b>5.3%</b>
1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19	119	0	0	0.0%
2   어르신 자원봉사	116	116	0	0	0.0%
3   어르신 정보화 교육	20	20	0	0	0.0%
4   경로효친 행사지원	27	27	0	0	0.0%
5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0	30	0	0	0.0%
6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77	77	0	0	0.0%
7   어르신 지도자육성	72	72	0	0	0.0%
8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70	70	0	0	0.0%
9   어르신 주거지원	100	66	0	34	34.0%
10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80	171	0	9	5.0%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b>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2개)</b>	<b>3,700</b>	<b>2,684</b>	<b>0</b>	<b>1,016</b>	<b>27.5%</b>
1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700	691	0	9	1.3%
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3,000	1,993	0	1,007	33.6%
<b>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6개)</b>	<b>5,268</b>	<b>4,559</b>	<b>0</b>	<b>709</b>	<b>13.5%</b>
1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80	80	0	0	0.0%
2 자활교육훈련	62	62	0	0	0.0%
3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196	165	0	31	15.8%
4 자활유통활성화	60	60	0	0	0.0%
5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4,800	4,122	0	678	14.1%
6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70	70	0	0	0.0%
<b>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3개)</b>	<b>3,822</b>	<b>2,202</b>	<b>0</b>	<b>1,620</b>	<b>42.4%</b>
1 이재민 재해보상	347	29	0	318	91.6%
2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309	1,215	0	1,095	47.4%
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166	958	0	207	17.8%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미집행발생 사유(불용률 42.4%)를 보면, 2017년에는 재난피해가 예상보다 적어 구호비 지급 및 물자 구매 등 집행률이 낮았으며,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불용률 17.8%)의 경우에도 예산시 편성했던 폭염일수(42일)에 비해 실제 폭염일수(33일)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 불용률 15% 이상 기금 사업의 구체적 불용사유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100	66	34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의집 48개소 임차료 및 부대경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계약,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2년단위 갱신계약시 임대료 상승) 등을 계상하기 어려워 미집행액 발생</li> </ul>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3,000	1,993	1,007	3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리 인하로 기존의 전세주택을 월세주택으로 전환,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기피 등으로 전세주택 물량 감소,</li> <li>•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주택 보증금도 동반 상승하여 보증금 지원액 1억으로는 상승액 수용이 어려움</li> </ul>
(자활계정)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196	165	31	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심사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지역투자형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li> </ul>
(구호계정) 이재민 재해보상	347	29	318	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재민구호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이나 실제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아 집행률 저조(동과목은 예비비 성격)</li> </ul>
(구호계정)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309	1,215	1,095	4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상황대응과)사업비일부 기금→ 국비 보조금(199백만원)으로 대체</li> <li>- 당초 행안부의 예상비용보다 실제 설치비용 감소</li> <li>- 표지판을 지주형→부착형으로 설치, 집행잔액발생</li> </ul>
(구호계정)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166	958	207	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르신 무더위쉼터 근무에 따른 인건비 등 잔액 발생(2017년 폭염일수 예상 42일→ 실제33일)</li> </ul>

〈표〉 장애인전세주택지원사업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구체적 불용사유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건수	35건	21건	104건 (중증 25, 공동생활가정 79)
지원건수	26건	10건	42건 (중증 17, 공동생활가정 25)
예산액	2,000,000천원	2,000,000천원	3,000,000천원 (중증 2,000,000천원, 공동생활가정 10,000,000천원)
지원금액	1,910,000천원	952,000천원	1,993,000천원 (중증 1,185,000천원, 공동생활가정 808,000천원)

- 장애인전세주택지원사업의 불용사유를 보면 각 연도별 목표대로 전세보증금지원자를 선정하였으나, 임대인의 전세주택 월세전환, 전세권 설정 기피, 전세주택 보증금 인상 등으로 선정자가 전세주택을 구하지 못해 지원 신청을 포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사업계획 수립시 정밀성을 높여 실집행액을 정확히 편성하고, 필요할 경우 운영계획을 수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는 지출계획 수립 당시부터 정밀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재원의 특성상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과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과도하게 증액하고 있는 바, 앞으로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수익률을 보면 장애인복지계정을 제외한 노인복지계정과 자활계정 및 구호계정은 연 1%대의 수익률을 얻는데 그치고 있음.
- 이는 개별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에 예치하거나 이율이 분기별로 변동되는 정기예금에 예탁함으로써 기금별 예탁금에 대한 이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의 경우, 정기예금 금리 하락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을 제외한 기금이 1%대의 기금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사료됨.
- 앞으로 기금별 여유자금과 연도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용예상액 등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요구불예금 등에 예치하여 기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수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기금 계정별 수익률 현황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7	2016	증감액	수익률 순위 <sup>주1)</sup>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61%	2.04%	△4	19
	장애인복지계정	2.32%	1.63%	81	1
	자활계정	1.65%	1.35%	17	18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0.61%	0.72%	457	21